

● 제29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·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3. 3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서울특별시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1334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20. 2. 5.
- 다. 회부일자 : 2020. 2. 1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가. 장애인 학대 등 피해 장애인에게 긴급분리에 따른 주거 및 양질의 상담·의료·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」 및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
- 나. 피해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고자 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·운영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5년 ('20. 4. 1. ~ '25. 3. 31.)
-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시설개요
 - 소재지 : 마포구 대흥동 20-4
 - 건축현황 : 1984. 6. 22건축('19. 11 .1. 장애인복지정책과 일반재산 편입)
 - 건축규모 : 건축면적 58.1㎡, 연면적 151.47㎡(지하 1층 ~ 지상2층)
 - 점유면적 : 80.89㎡(대지 : 사유지 1053.9㎡)



○ 조직운영

- 종사인력 : 6명(시설장1명, 생활지도원등 종사자 5명)
- 입소정원 : 8명

○ 위탁사무

- 숙식의 제공
-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
-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-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
-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 13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
○ 필요성

-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쉼터 운영 기준에 적합한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민간위탁으로 선정하고자 함.

라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

- '20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('20.1.29.)
-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 13
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
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(이하 "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3.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4.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
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560백만원(전액시비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개요 및 제출 경위

가. 개요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‘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’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1항1)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
나. 제출경위

- 현재 집행부는 '15년부터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단기보호시설내에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중이며 쉼터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<기 운영 중인 피해장애인 쉼터 현황>

○ 시설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4
- 규 모 : 행복플러스 단기거주시설과 공용
- 운영인력
 - 종사자 : 센터장 1명, 직원2명
 - 입소정원 : 4명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(사회복지법인 승가원)
- 공간구성



- '20년 예산 : 120백만원(국비 50% 시비 50%)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한편, '17년8월 장애인복지법 개정²⁾에 따라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, 동법 시행규칙에 설치 운영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설²⁾되었는데, 현재 운영중인 쉼터는 분리된 별도 공간 확보, 면적 기준 등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, 개정 장애인복지법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한 쉼터를 추가 설치 운영코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.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³⁾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³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3⁴⁾ 및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서 시장이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,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
2) '17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신설 내용

- 시설 : (기존)단기거주시설 공동이용 → (개정)분리된 별도 공간(66㎡이상) 확보
- 인력 : (기존)종사자 2명 → (개정)6명(560백만원) 확보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4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5)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-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, 직업 재활 훈련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피해 장애인 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제10조제3항6)에서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장애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-
- 5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 - 6)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금번 시장이 제출한 위탁 사무는 서울시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긴급분리에 따른 주거 및 양질의 상담·의료·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하우를 지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, 기존 쉼터 운영평가에서 지적되었던 ① 긴급 입소에 따른 사전정보(질환 및 장애특성) 부족과 이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② 쉼터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